

입법평가 회의자료집 ⑥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2010. 3. 18.

일 정

◇ 목 적 :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에 관한 지난 3년간
입법평가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여 향후
연구방향 제시

◇ 일 시 : 2010년 3월 18일(목) 10:00~12:00

◇ 장 소 : 롯데시티호텔 레스토랑 나루(2층)

◇ 참 석 자

이익현 법제심의관(법제처 행정법제국)

신상환 법제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

임송학 법제심의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이현출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이순태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석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조용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배건이 연구인턴

목 차

◎ 연구계획서	7
◎ 회의 요약	11
◎ 회의록	13

■ **수시연구과제명(2010년)**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책임자**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가에서 입법평가가 시행된 이래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사한 평가와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의문은 입법평가의 독자적인 가치 및 기존 평가와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인바, 입법평가의 기준, 방법 및 도입 등과 관련된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며 평가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이 정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그에 일조함
- 따라서 입법평가 기법을 포함한 평가 프로세스를 선진국과 비교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유관 평가제도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입법평가 제도의 효용성을 높여 입법의 선진화 및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대희외 2인(2008) -연구목적: 입법평가의 기준과 평가 지침의 주요국가 소개 및 국내 유사제도의 비교검토	-문헌조사 -비교법적 연구 -사례연구	-입법평가지침의 필요성 및 기능 -주요국가(독일, 스위스,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의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 -우리나라의 입법관련 평가기준과 평가지침(법안비용추계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 등)
	2	-과제명: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수용(2008) -연구목적: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 제도 소개 및 우리나라의 입법평가관련 제도를 비교론적 분석하여 입법평가의 개념을 정립	-문헌조사 -비교법적 연구 -사례연구	-입법평가 지침의 의의 -유형별 입법평가 및 평가방법 -입법평가의 기법(법규범의 체계성 및 이행가능성 심사, 비용편익분석 등)
	3	-과제명: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김수용(2009) -연구목적: 입법평가의 개념, 기준, 방법, 절차, 입법평가서와 입법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입법평가지침을 마련	-문헌조사 -비교법적 연구 -사례연구	-입법평가의 개요 -입법평가의 유형 및 기준 -입법평가의 방법 및 절차 -입법평가서의 작성요령 -입법평가의 지침
본 연구	-기존의 연구는 문헌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부문별, 독립된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입법평가 기법정립과 프로세스간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조사 -비교분석	-입법평가 관련제도 비교 및 종합분석 -입법평가기법의 특성도출 -규범분석과 기타분석(경제분석및 설문분석)과의 프로세스 연계	

■ 주요 연구내용

- 입법평가와 관련 평가제도간의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가이드라인 비교
 -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가이드라인 비교
 - 입법평가와 부패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 비교
- 입법평가 기법을 포함한 프로세스 비교연구 및 개발
 - 규범분석방법론의 활용과 프로세스
 - 경제분석방법론의 활용과 프로세스
 - 설문분석방법론의 활용과 프로세스
 - 각 입법평가방법론의 프로세스간 연계성 확보
-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2010. 1-2010. 4)
- 전문가회의(2010. 5)
- 워크숍개최(2010. 6)

■ 기대효과

선진각국의 입법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 평가와의 차별성 도출 및 평가프로세스 점검 등 입법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법평가 가이드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전문가회의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신속한 입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함.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해당사항 없음

■ **연구기간**

2010. 1 ~ 2010.10

■ **연구예산**

■ **참고문헌**

회의 요약

<임송화>

『입법평가의 도입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결론이 필요』

- 1) 입법평가의 실효성 및 현실성, 기타 평가와의 관계설정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어느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함.
- 2) 입법평가의 유형과 관련하여 사전평가와 병행평가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후평가의 도입여부와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신상환>

『입법평가의 적용범위와 수준, 방법론간 관계설정, 학제간 연구가 필요』

- 1) 유럽에 기반한 입법평가가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법평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고 제도화 단계에 있어 한국적 문화인식에 맞게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함.
- 2) 입법평가의 도입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위해 실무, 연구, 학계가 조인트해서 실무 작업도 함께 해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을 어떻게 입법평가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의 논의도 중요하며 각종 영향분석 중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은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함.
- 3) 각국의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시 있었던 찬반 논의, 그리고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함.

<이익현>

『입법평가와 유사제도의 개념정립과 현행 평가프로세스와 관계설정이 필요』

- 1) 입법평가와 입법심사 등 유사제도와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외국제도의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 2) 현행 제도 중 입법평가와 유사한 부분을 정리하고 사전, 병행, 사후 부분별로 체크하면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각각의 프로세스를 놓고 외국제도와 비교해 한국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3) 미국은 전문분야의 법안은 법원이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견과 당사자의 의견청취여부, 절차정의 충족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메타평가를 활용한다. 입법평가에서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함.

<이현출>

『입법평가의 체크리스트 기법의 개발 필요』

- 1) 실무적으로 경험에 보면 입법평가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 만드는 정도라 생각되는 데 현재의 입법평가는 비용편익분석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됨.
- 2) 입법평가 전반의 큰 틀 속에서 하나의 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회의록

이순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특히 관련 행정 및 입법실무가들일 모시고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되며 본 진행을 맡으신 윤광진 박사님께서 회의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윤광진:

입법평가센터에서 정책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은 3년 연구의 정리의미도 있고 그 속에서 한국에 이를 정립하는 의미도 있구요. 본 회의가 착수심의적 성격도 될 수도 있구요. 입법평가제도가 주로 유럽계(독,오,스)의 입법평가적 틀을 연구하고요. 유럽계를 기본으로 하고 영미계의 틀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갈 것이구요. 그와 관련된 각종 평가와 기법들의 차이를 점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입법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범분석이 들어가야 하구요. 그 외 경제분석도 함께 포함해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께서 보다 큰 틀의 관점에서 연구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순태:

먼저 입법평가에 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법제처와의 연구관계도 있고 이익현 심의관님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환 심의관님께서도 관련 논문도 쓰시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관련해 모시고 진지한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임송학:

2007년도에 법제처에서 입법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후 이를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2007년도 말에는 도입여부를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후 2008년도부터는 법도 만들고 도입도 하자고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연구원에서도 팀을 만들고 연구를 해왔죠. 오늘 보니까 연구 중에 굉장히 중복된 사항(주요국, 절차방법 등)도 많고, 이미 연구는 많이 되었으므로, 도입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일 도입을 한다면, 그 실효성 및 현실성은 무엇이며, 기타 평가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만일 한다면 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지 등과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이 나와 할 시기라 생각되면 이번 연구를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순태:

저희들도 그런 결론부분에 대한 연구결정은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신심의관님 말씀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환:

저도 한 10년 되었죠. 관련부처(독,프, 오)를 방문하고 나서 논문을 썼었는데, 세종시처럼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이 마련되는 경우나, 환경영향평가처럼 본질이 달라진 경우처럼 아직 우리의 현실이 많이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법평가의 경우 규범평가와 많이 비슷해요. 대한민국의 입법현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제연구원의 연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공부를 3년 하면서 입법 분야에 획기적으로 이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더 개선시킬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고민되어야 할 부분은 유럽에 기반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들여올 것 인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맞는 부분인지,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제도 중 어떤 부분을 우리나라에 맞게 취사선택해서 들여올 수 있을지가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입법평가는 필연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 연구, 학계가 조인트해서 실무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영향분석을 어떻게 이 속에 아우를 것인지도 중요사항 중 하나이며, 각종 영향분석 중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은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도의 내용상 10개 정도 포인트를 정해서 그와 관련된 법제처의 위상에 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익현:

입법평가의 경우 개념상 혼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각 부처에게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입지를 확장시켜 볼까 하는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질문이 입법평가와 입법심사와 무슨 차이가 남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같다고 하면 나중에 그 진행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실용성에 대한 고민을 염두하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개념정립을 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구입법평가처럼 제도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각 부처간에 흩어져 있는, 평가를 취합해 볼 때, 규범화가 아니라, 정책을 놓고 행하는 사전, 병행, 사후에 관한 평가는 정책을 법제화하고

제도화 이후에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념정립을 한다면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각각에서 흩어져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행심사는 법제처나 국회에서 하고 사후심사의 경우 국민불편법령제도개선처럼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 중 입법평가와 유사하거나 같은 부분을 정리해서 연구를 진행하여, 사전 병행 사후 부분별로 체크하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알게 되고, 이로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놓고 외국제도와 비교해 한국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됩니다. 중요한 입법일수록 우회해서 진행되는 것이 문제인데, 규범화되어서 제도화 되면, 제도의 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할 때, 제도자체의 문제점 또한 연구해서 사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서 연구했으면 합니다.

임송학:

한 가지만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절차가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는 입법평가는 뭐다라고 놓고 보면, 빠진 부분은 무엇이고, 그 빠진게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도입을 할지, 도입을 한다면 절차가 하나 더 느는 꼴이 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각 부처에 흩어있는 것을 한 기관으로 할지, 특히 보완할게 무엇인지, 보완한다면 또 다른 절차로 할지, 통합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중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상환:

지금까지의 개념절차는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부분에 대한 논의 정리부터 시작하면 진행이 안됩니다. 저는 국토부 심

의를 맞고 있는데, 정부쪽은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법일수록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입법예고의 경우 반대쪽 논리는 듣지 않고, 찬성쪽 얘기만 듣고 진행하고, 부처도 서로 협의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만 반영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체법 같으면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죠. 하지만 입법평가가 절차적 내용적 실체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현실에 따라 바뀌는 그런 졸속입법을 못하게 하는 절차적 정의를 위한 정책적인 부분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성, 효율성 및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외국의 제도 아무리 연구해도 번역하면 1차 연구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입시 영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평가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이것을 우리 문화 인식에 맞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현:

입법평가 도입시 우리 심사를 놓고 보면 법제처 심사는 형식적이고 정책심사는 안하더라고 말하거든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결정의 경우, 법제처가 그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법원이 법안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는가, 양 당사자의 의견을 잘 들었는지, 절차적 정의를 충족했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래서 메타평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입법평가제도라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면, 이를 체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출:

공부를 하다보니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입안을 만들 때 결국은 입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와 다른 입법평가는 무엇인가가 고민인데, 국회로 돌려보면은, 법제실에서 법체계의 규범 분석을 하고, 예산처에서는 비용추계를 하고 법안으로 제출하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나름대로의 전문가의견을 구한 후 상임위 심의로 대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점을 입법평가를 하겠느냐를 놓고 본다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 만드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근데 입법평가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안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평가에 기초해서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 단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하면, 그에 맞춰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사업평가를 하면서 예산평가를 합니다. 측면에 있어서 입법평가를 해서 독자적 위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려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는 사회적 동의를 선거이전에 구하게 되는 메니페스토운동의 경우 지난해부터 소개되었는데, 이미 입법평가와 유사기능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느냐 하는 대안에 대한 평가는 시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방법론 정비시 방법론대로 전개를 하고, 입법평가 전반의 큰 틀 속에서 하나의 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는게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상환:

독일의 문헌에서는 입법평가가 정치적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에 대한 입법평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될까라 생각합니다. 가장 신속하고 가장 빠르게 통과가 되었으니까요. 엄청난 사회적인 소요를 몰고 왔던, 내용들이 입법평가의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들여와서는 형해화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보면서 지나온 경과과정을 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놓고 볼 때, 도입된다 라고 하면, 실무에 세종시법 만들어진 과정을 놓고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금방 볼 수 있죠. 의원들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는 법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나름대로 속내를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입법평가의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각국의 가이드라인 제정시 있었던 찬반 논의들,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한 두 가지라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에 바로 법안을 보냅니다. 그 기관이 보고서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 대통령이 예산을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청문회를 몇 번씩 하거든요. 지금 법제연구원에서 입법평가를 모색을 하는데, 만약에 법제연구원연구의 경우 그런 내용자체를 다 소화해서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송학:

사전평가의 경우 이미 다 시해중이거든요. 사후평가의 경우 일회성으로 하고 있는데, 사후평가절차가 제도화 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예를 들면 규제일몰제 같은 것을 놓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사후평가도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죠. 사전평가쪽은 많은 절차와 기법이 동원되어 있고, 병행평가의 경우도 입법심사라든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후평가로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일 한다면 법마다 3년의 기간을 정해 평가할 것인지와 같은 사후평가의 도입여부와 그 방식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현:

정책관련 평가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정책평가란 말을 앓고 있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용적인 개선에 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고,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의 경우, 규범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평가를 하였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제도의 개선책, 실용책등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벨기에 브뤼셀 대학의 빈트겐스 교수의 경우 *Legisprudence*란 책에서 법이 방향 없는 해론에 빠져 있는 것은, 해석자들이 자연법과 *Regulation*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고비용이 문제인데, 경험에 기초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빈트겐스 교수의 견해에 동감하며, 본 연구는 그런 실용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현숙:

빈트겐스 교수님과의 컨택의 경우 제작년 학술회의때 초청하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편찮으셔서 못오셨어요. 올 해 학술회때라도 모

셔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임송학:

정리를 하자면 2편 3편에 초점을 두어서 결론적인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익현:

입법평가연구의 경우, 사전정책평가, 법령심사와, 규제영향평가 및 등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해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송학: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순태:

6월 3차 회의 끝나고 말에 가이드라인을 한 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현재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한다면 가능한 한 7월말까지 만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태:

3분 국장님들을 모시고 만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윤광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도 있고, 향후 사업을 신중해야 하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자문을 구하다 보면은, 연구의 범위가 방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하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송학:

2007년도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낸 게 있었는데, 박세진 원장님은 좋은 테마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잡은 거죠. 사실 법제처 사람들 동원되가지고 프로세스 연구하고 연구하면 6개월만 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제연구원에서 연구할게 없어. 이제는 결론을 내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박사님께서 골고루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순태:

조국장님과 만남을 통해서 연구원의 연구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해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현:

현재 정부 내에서 행해지는 정책들의 경우, 방향없이 불쑥불쑥 행해지고 있는데, 정말 문제의식이 있다면,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현숙: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부출현연구기관이므로,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도화 귀속주체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이익현:

연구의 경우 실태분석 많이 부족한 듯한데 그 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이순태:

저도 그에 대한 부분은 동감합니다.

신상환:

예민한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 어디에서 할 것인지, 현재 핵심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놓고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시켜 보았으면 합니다.